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13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 강훈식·허 영·문진석

박희승 • 이훈기 • 신영대

이정문 • 이개호 • 한정애

이재관 • 민형배 • 서삼석

김승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,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·생활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, 부모의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년 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높이거나 없애는 추세임.

이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, 보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9조 및 제19조의2제3항).

법률 제 호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60세"를 "60세(다자녀근로자 정년의 경우에는 65세)"로, "60세"를 "60세(다자녀근로자 정년의 경우에는 65세)"로 한다.

다만, 2명 이상의 자녀(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,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,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는 포함하지 아니한다)를 둔 근로자의 정년(이하 "다자녀근로자 정 년"이라 한다)은 65세 이상의 범위에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19조의2제3항 중 "60세"를 "60세(다자녀근로자 정년의 경우에는 65세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의 개정

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- 1.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: 2026년 1월 1일
- 2.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: 2027년 1월 1일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9조(정년) ① 사업주는 근로자	제19조(정년) ①		
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			
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2명 이상의</u>		
	자녀(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		
	기준으로 하고, 양자 및 배우자		
	의 자녀를 포함하되, 입양된 자		
	년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		
	포함하지 아니한다)를 둔 근로		
	자의 정년(이하 "다자녀근로자		
	정년"이라 한다)은 65세 이상		
	의 범위에서 자녀의 수를 고려		
	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		
	령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.		
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	2		
고 근로자의 정년을 <u>60세</u> 미만	<u>60세(다자</u>		
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<u>60</u>	녀근로자 정년의 경우에는 65		
<u>세</u> 로 정한 것으로 본다.	<u>세)</u>		
	<u>60세(다자녀근로자 정년</u>		
	<u>의 경우에는 65세)</u>		
제19조의2(정년연장에 따른 임금	제19조의2(정년연장에 따른 임금		
체계 개편 등) ①・② (생 략)	체계 개편 등) ①・② (현행과		
	같음)		

③ 고용노동투	나장관은 건	성년을 <u>6</u>
<u>0세</u> 이상으로	. 연장하	는 사업
또는 사업장의] 사업주	또는 근
로자에게 대통	· 등령령으로	정하는
바에 따라 임	금체계 개	편 등을
위한 컨설팅	등 필요한	지원을
할 수 있다.		

(3)			<u>6</u>
0세(다자녀근로	.자 정	년의	경우
<u>에는 65세)</u>			